

	<h2 style="margin: 0;">장학금지급규정</h2>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4조에 의거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고무, 격려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장래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금지급과 장학생선발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류) 장학금의 종류에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있다.

제4조(사무) 장학에 관한 사무는 학생입학처에서 주관하고 학생입학처장이 총괄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5조(설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입학처장이 된다.
2. 삭제
3.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및 개선방안
2.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사항
3. 장학에 관한 관리운영 및 기타 중요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장학금 신청, 선발 및 제한

제9조(배정) 각종 장학금은 학과(전공)별 및 학년별로 선발하고, 그 시행은 학기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장학금신청) 장학금 신청기간은 별도로 공고하며,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과장·주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담당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선발기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우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장학금지급규정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2/9

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가정이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자.
4. 국가 또는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5.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
6. 수혜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수혜제한 및 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수혜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해당학기 최소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단, 도우미장학 및 근로장학은 예외로 한다.)
2. 해당학기 실점평균 70점 미만인 자.(단, 1학년 1학기 장학대상자 및 도우미장학, 근로장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1. 28.>
3. 재학 중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5. 휴학한 경우
6.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로서 수업료 전액 납부 대상자가 아닌 자.
7. 자퇴 및 제적 시에는 장학금을 환수한다.(단, 입학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8. 해당 장학 자격 상실 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이중수혜 제한) ① 교내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단, 공로장학, 가족장학, 학풍조성장학, 사랑장학, 성적향상장학, 도우미장학, 가산홈지원 장학, 평보장학, 스타장학 중에서 “재학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전공인재육성 장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 30.>

② 2종 이상의 교내장학 대상자에 해당되어 중복이 불가할 경우 본인이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③ 제①,②항 이외의 별도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④ 신입생 중 교내장학 대상자이나 입학 전 등록금 면제로 인해 이중수혜 제한 대상이 된 경우 차액에 한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입학학기에 한해 지급한다.) <신설 2020. 6. 30.>

제14조(교외장학) ① 외부로부터 기탁되는 모든 교외장학금은 대학지정 계좌에 입금조치 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교외장학은 제12조의 1,2호에 해당하는 수혜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교외(사설 및 기타) 장학생 선발·추천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6. 30.>

제15조 (학비감면) 학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총장이 인정하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대학교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비를 감면 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장학금지급규정</h2>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3/9

제4장 장학금 지급

제16조(장학증서)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증서를 줄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제17조(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분납자는 예외로 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

② 장학금 기준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다.(단, 근로장학, 공로장학, 도우미장학금, 생활관 장학금 및 비수업료 지원 교외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③ 선발시기가 동일할 경우 장학금은 교외 장학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을 우선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8.>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88.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차 개정, 1990. 2. 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차 개정, 1991. 11.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3차 개정, 1992. 6. 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4차 개정, 1994. 11.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5차 개정, 1995. 10.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6차 개정, 1997. 3.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장학금지급규정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4/9

부 칙 <7차 개정, 1998. 4.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8차 개정,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9차 개정, 1999. 2.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0차 개정, 1999. 7.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1차 개정, 2000. 1. 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2차 개정, 2001. 12.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3차 개정, 2004. 2.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4차 개정, 2005. 3.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5차 개정, 2006. 1.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6차 개정, 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장학금지급규정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5/9

부 칙 <17차 개정, 2008. 2.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8차 개정, 2009. 3.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9차 개정, 2010. 4.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차 개정, 2012. 4.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1차 개정, 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2차 개정, 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3차 개정, 2014. 8.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4차 개정, 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5차 개정, 2016. 7.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6차 개정,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7차 개정, 2018. 2. 15.>

	장학금지급규정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8차 개정, 2018. 6.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9차 개정, 2018. 12.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30차 개정,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31차 개정, 2020.06.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중수혜 예외 장학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이중수혜 예외 장학 명칭 변경 및 추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중수혜 대상자 교내장학 차액지급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4항의 이중수혜 교내장학 차액지급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도 적용한다.

	<h2 style="margin: 0;">장학금지급규정</h2>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7/9

개 정 이 력			
개정 번호	현행 구분	개정 일자 (시행 일자)	주요 내용
0	제정	1988.09.01 (1988.09.01)	「학칙」 제74조에 의거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고무, 격려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장래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1	개정	1990.02.12 (1990.02.12)	생 략
2	개정	1991.11.01 (1991.11.01)	생 략
3	개정	1992.06.17 (1992.06.17)	생 략
4	개정	1994.11.01 (1994.11.01)	생 략
5	개정	1995.10.01 (1995.10.01)	생 략
6	개정	1997.03.01 (1997.03.01)	생 략
7	개정	1998.04.01 (1998.04.01)	생 략
8	개정	1998.09.23 (1998.09.23)	생 략
9	개정	1999.02.26 (1999.02.26)	생 략
10	개정	1999.07.27 (1999.07.27)	생 략
11	개정	2000.01.11 (2000.01.11)	생 략
12	개정	2001.12.01 (2001.12.01)	생 략
13	개정	2004.02.26 (2004.02.26)	생 략
14	개정	2005.03.01 (2005.03.01)	생 략
15	개정	2006.01.20 (2006.01.20)	생 략

	장학금지급규정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개 정 이 력			
개정 번호	현행 구분	개정 일자 (시행 일자)	주요 내용
16	개정	2007.02.28 (2007.02.28)	생 략
17	개정	2008.02.20 (2008.02.20)	생 략
18	개정	2009.03.26 (2009.03.26)	생 략
19	개정	2010.04.19 (2010.04.19)	생 략
20	개정	2012.04.01 (2012.04.01)	생 략
21	개정	2013.02.28 (2013.02.28)	생 략
22	개정	2014.02.28 (2014.02.28)	생 략
23	개정	2014.08.01 (2014.08.01)	생 략
24	개정	2015.05.01 (2015.05.01)	생 략
25	개정	2016.07.15 (2016.07.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중수혜 제한 예외 장학규정 개정 2. 이중수혜사회봉사장학(폐지) 삭제 및 생활관 장학(신설) 추가 3. 개정 조항 : 제3장제13조제1항
26	개정	2017.01.02 (2017.01.0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보 및 스타(재학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장학을 이중수혜 제한 예외 장학에 포함 2. 생활관 장학은 비등록금성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 예외 장학에 포함 3. 개정 조항 : 제3장제13조1항, 제4장제17조제2항
27	개정	2018.02.15 (2018.02.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구성 요건 및 인원 관련 규정 개정 2. 개정 조항 : 제2장제6조제3호
28	개정	2018.06.01 (2018.06.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퇴 및 제적 시 입학금에 해당하는 장학은 환수 하지 않도록 개정 2. 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개정전 학적변동자도 소급적용) 3. 개정 조항 : 제3장제12조제7호
29	개정	2018.12.01 (2018.12.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위원회 간사를 학생입학처 팀장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개정 2. 개정 조항 : 제2장제6조제4호

	<h2 style="margin: 0;">장학금지급규정</h2>		규정번호		4-5-004
			제정일자		1988.09.01
			개정일자		2020.06.30
			개정번호	31	페이지

개 정 이 력			
개정 번호	현행 구분	개정 일자 (시행 일자)	주요 내용
30	개정	2019.11.28. (2020.01.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내장학 실적평균 예외 대상 장학 중 성적향상, 희망 장학 삭제 2. 교내장학 이중수혜 제한 중 본인선택 조항 명확하게 개정 3. 평보장학증서 발급기준 의무 삭제 및 총장이 정하도록 개정 4. 선발시기가 동일할 경우 교외장학금 우선 지급 원칙 신설 5. 개정 조항 : 제3장제12조제2호, 제3장제13조제1항제2항, 제4장제16조, 제4장17조3항
31	개정	2020.06.30 (2020.07.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중수혜 예외 장학 중 생활관 장학을 가산홈지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전공인재육성 장학 추가(일부 문구 변경) 2. 입학전 등록금 면제로 인해 이중수혜 제한 대상이 된 경우 차액에 한해 지급가능함을 규정에 명시 3. 교외(사설 및 기타) 장학생 선발관련 사항 명시 (단, 선발관련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함) 4. 개정 조항: 제3장제13조제1항제4항, 제3장제14조제3항
<p>※ 현행 구분 : 제정, 개정, 폐지</p>			